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2004.

제 출 자 : 달 성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2002.11.29)되어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잡종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잔액을 5~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는 이자율을 인하함(안 제21조)
 - 8퍼센트 ⇒ 6퍼센트
 - 5퍼센트 ⇒ 4퍼센트
-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할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인상율을 최소화하였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대부에 대하여는 특례조항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추가(안 제23조)
-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를 일률적으로 15퍼센트를 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 차등부과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안 제29조)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109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가조건

제21조 제1항중 “잔액에 연 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3조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u>법 제109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제 8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 -----</p> <p>② -----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 -----</p>
<p>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u>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u>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u>법 제88조</u> -----</p>
<p>제10조 (관리및처분) ①~③(생략)</p> <p>④<u>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 (관리및처분)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13조 (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u>조건으로</u> 붙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13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허가조건</p>

현행	개정안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잔액에 연 4퍼센트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 ----- 잔액에 연 6퍼센트 ----- ----- -----</p> <p>③ ----- ----- ----- 잔액에 연 6퍼센트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p>	<p>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p>

현행	개정안
<p>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 ----- -----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 제외) 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u>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u>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u>고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u>교환차액을</u> ----- ----- ----- 영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 <u>고지</u> 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3조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 ----- ----- ----- -----</p>